파주시 공고 제2026-1482호

- 통일동산 관광특구 권역 대상 -
제2차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 공사 지원사업

모두가 편리하게 파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취약계층 및 동반 여행자를 위한 민간시설 대상 **『제2차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 공사 지원사업』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13일

파 주 시 장

Ⅰ 공고개요

○ 공 고 명: 통일동산 관광특구 권역 대상
제2차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 공사 지원

○ 공고기간: 2026. 5. 13.(수) ~ 6. 10.(수)

○ 신청기간: 2026. 6. 3.(수) ~ 6. 10.(수)

○ 신청대상: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역 내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
민간 관광시설 전반(식음・쇼핑・숙박・체험・전시시설 등)

※ 관광객 이용과 직접 관련된 공간에 한하여 지원(창고, 사무실 등 제외)

○ 지원내용: 관광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

※ **관광취약계층이란**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일시적 이동 불편인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

○ 신청방법: 현장접수(헤이리 여행스테이션)

○ 선정발표: 2026. 6. 24.(수)(예정)

-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(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)
-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Ⅱ 신청자격

○ 자격기준(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)

- 공고일 기준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민간 관광시설 전반(식음·쇼핑·숙박·체험·전시시설 등)
-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또는 법인
-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자영업자 또는 법인

※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경우,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 건물 소유주(임대인)의 사전 동의 필요

【지원배제 요건】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무 대상 업소
-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유흥업소,골프장, 무도장)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
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무점포 사업자
- 매출액(수입금액)을 신고하지 않았거나, 전년도 연매출액(수입금액)이 “0”원으로 신고된 경우
- 인테리어 등 미관개선 및 영업시설(주방,가전,간판 등), 생활,주거 공사 등
- 최근 3년 이내 국비·도비·시비 등 유사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공간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음

※ 유사 시설개선사업이란 동일 시설 내 동일 공간에 대해 접근성 개선 또는 시설개선을 지원받은 경우를 의미함 단, 동일 시설 내라도 개선 위치 또는 개선 항목이 상이한 경우 지원 가능

Ⅲ 추진일정

구분	일정(안)	비고
사업 공고	2026. 5. 13.(수) ~ 6. 10.(수)	-
신청 기간	2026. 6. 3.(수) ~ 6. 10.(수)	현장접수 **(헤이리 여행스테이션)**
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	접수 완료 후 일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실시	접수 후 10일 내 현장 평가
선정 결과 발표	2026. 6. 24.(수) 예정	개별 안내 예정
시설 개선 및 정산서류 제출	2026. 6. ~ 9.	이메일 제출
현장 검사 및 지원금 교부	2026. 6. ~ 9.	접수 후 2주일 이내 지원금 교부

※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Ⅳ 지원내용

구분	소규모 시설	대규모 시설
지원대상	· **단일 시설 및 서비스 개선** - 단일 시설 또는 일부 공간에 대한 부분 개선 - 이동식 경사로, 도움벨, 자동문, 점자안내판 등 설치 - 공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(예시) 경사로 설치, 점자메뉴판 제작, 유아용 의자 구입 등	· **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시설개선 및 복합시설 개선** - 화장실 개선, 객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조, 출입구 확장 등 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시설개선 - 다중 이용공간 또는 복합시설에 대한 개선 - 공사 범위가 넓고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(예시) 화장실 전면 개선, 객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조, 출입구 구조개선 등 ※ 관광객 이용 객실에 한함 (종사자 전용 공간 제외) ※ 관련 법령에 따른 인·허가 사항은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 및 이행해야 함
지원금액	· 최대 2천만원	· 최대 5천만원
지원항목	**(접근성 개선)** - 출입구 경사로(이동식 경사로 포함), - 출입구 개선(핸드레일 설치 등) - 자동문 - 출입구 도움벨 - 화장실 정비 - 객실 내 접근성 개선(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) ※ 법적 의무시설 제외 **(서비스 개선)** - 입식(의자형) 식탁 설치 -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- 유아용 의자 구입 - 기저귀 교환대 설치 - 점자 안내판(메뉴판) 제작 등 ※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하며, 필요 시 서비스 개선 항목을 병행 가능 ※ 서비스 개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 제한되며, 접근성 개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가능	
유의사항	· **부가가치세 자부담 필수** · 신청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선정. 선정 후 시설 개선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선 지출 → 정산 서류 및 현장 검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금 확정 후 지원금 교부 · **인테리어/미장·도장 등 미관 개선, 영업시설·주방기구·가전·가구류, 간판교체, 일반 수선유지, 인건비·임차료·공과금, 과태료·벌금 등 지원 불가** · **단순 시설 유지·보수 및 노후 교체 불가**	

※ 소규모 · 대규모 구분은 현장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종합 판단

○ 시공(외주)업체는 사업 이해도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 관내 업체 활용을 권장함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시공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 활용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만 타 지역 업체 활용 가능

V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필수 제출	· 민간시설 개선 공사 신청서	서식 1
	· 추진계획서	서식 2
	· 개인정보수집 동의서	서식 3
	· 견적서(부가세 포함)	-
	· 영업신고증, 영업신고 변경이력 · 사업자등록증 사본	-
	(공통) · 건축물대장(현황도면 포함)	-
	(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) · 건축물소유자 사전 동의서 – 서식 제공 · 임대차계약서(사본)	서식 4(동의서) -
	(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 경영의 경우) · 가족관계증명서	-
	·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-
	· 확인서	서식 5
해당시 제출	·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	서식 6
	·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	서식 7
완료시 제출	· 지원금 신청 및 사업 결과 보고서	서식 8

Ⅵ 심사 및 평가방법

○ 선정기준

- 정량평가, 정성평가, 가산점의 합산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

구분	배점	세부 심사평가 항목
정량평가	60	▪ 상시근로자수(고용보험가입 기준) ▪ 사업기간 업력(사업자등록증 기준)
정성평가	40	▪ 사업 연관성(사업계획, 지원내용, 기대효과) ▪ 사업 타당성(수행의지, 소요비용)

- 1차: 서류 심사(신청자격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)
- 2차: 현장 평가

○ 현장 평가기준

구분	평가기준	평가방법
현장 상태 검토	· 서류 내용과 실제 일치 여부, 사진대장 검증	적/부
실행 가능성	· 견적의 적정성, 공사 난이도, 법적 제한 검토	
사업 의지	· 사업자의 수용도, 설명 충실도, 현장 대응 태도	

Ⅶ 지원금 신청

○ 지원금 신청방법

- 사업 완료 후 3일 이내 신청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 신청

○ 지원금 지급절차

- 사업자가 시설 개선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외주업체에게 선 지급
- 정산서류 및 현장 검사 후 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지원금 신청 서류

구분	제출서류	비고
1	· 지원금 신청 및 사업 결과 보고서(사진포함)	서식 8
2	· 공사 계약서	-
3	· 거래명세표(거래의 세부내역, 공사 및 물품 구입 등) · 무통장 입금확인증, 이체확인증,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· 카드결제 영수증	-
4	· 사업자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	-
5	· 지원 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	서식제공

Ⅵ 사업 운영 지침

○ 지원 선정 취소

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**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(제작)한 경우**
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-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시공(외주)업체, 공사기간, 공사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
- **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**
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- 신청기업에 휴·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(사업기간 내 사업 휴·폐업·양도 시 지원불가)
-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
-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○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

-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(지원기간, 외주업체 등)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【서식 6】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
- **변경 시 공사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증액되지 않음.**
- 지원포기의 경우【서식 7】제출하여야 함

○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- 파주시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○ 공사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**공사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함.**
- **자영업자,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일 경우 :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.**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·서명과, 책임대표 명의로 초과금 입금, 지원금 수령 등
- 지출증빙은 은행(또는 ATM)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, 입금날짜,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.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
- 지원금 지출의 방식

▸ 자영업자, 법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자영업자, 법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
○ 시공(외주)업체 선택 시 유의 사항

- 시공(외주) 업체는 사업 이해도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파주시 관내 업체 활용 권장,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

※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시공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 활용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만 타 지역 업체 활용 가능

- 시공(외주)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

☎ 한국생산성본부 02-724-1112, 02-724-1102, 파주시청 031-940-4361